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관련 안내 사항
-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홍보관 관람을 최대한 자제하고, 분양안내는 홈페이지(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com)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방문 시 준수사항
 ① 홍보관 입장 시 마스크 착용필수
 ② 체온 측정 시 37.3도가 넘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③ 손 소독제,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홈페이지(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com) 운영을 통한 분양 상담전화(02-426-0889)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문의와 신청자 개인별 다양한 상황에 따라, 비대면 상담으로 인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년 4월 17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지자체 최초 모집공고 승인 신청서 접수일 2020년 06월 30일)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년 10월 08일 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강동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이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08.) 현재 서울시(주민등록등본 기준)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 (2018.10.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10.08. 이전부터 계속 거주)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부적격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08.)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본 아파트는 주택형 전용85㎡이하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포함)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무주택 선정시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1항에 의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소수점이하는 절상함.)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됩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예비입주자의 총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년 5월 4일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2018년 5월 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다른 단지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특별공급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 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 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의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6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및 대출규제 안내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부터 8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사업 주체는「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특별공급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8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 당 1건으로 강화

■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금지 하기로 한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공급신청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일반 1순위(해당) (서울 2년 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서울2년미만/인천/경기)	일반 2순위 (서울/인천/경기)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10월 20일(화요일)	10월 21일(수요일)	10월 22일(목요일)	10월 23일(금요일)	10월 29일(목요일)	11월 10일(화요일) ~ 11월 12일(목요일)
방법	인터넷 청약 (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서류 지참하여 홍보관 방문 (10:00 ~ 16:00)
장소	■당사 홍보관 ■한국감정원 (www.applyhome.co.kr)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홍보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8-14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특별공급 해당 접수서류 지참 시 가능,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 43141호(2020.10.0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52번지 일대 /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층 3개동, 총 100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37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세대, 노부모 부양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 면적 기준)	타입 (약식 표기)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비고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총 공급	특별공급					일반 분양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877	01	059.9700A	59A	59.9700	20.7000	80.6700	47.8800	128.5500	41.5500	2	-	-	-	-	-	2	1	
		02	059.9700B	59B	59.9700	20.6000	80.5700	47.8800	128.4500	41.5000	11	1	1	2	-	4	7	2	
		03	084.9600	84	84.9600	27.2400	112.2000	67.8400	180.0400	57.7900	24	-	2	4	1	7	17	6	
	합계										**37**	**1**	**3**	**6**	**1**	**11**	**26**	**9**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59A, 59B, 84 타입의 경우 타입 약식 표기로 되어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고상 기준인 주택형 59A,59B,84로 청약 신청해야 함.)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저층으로 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타입	공급 세대수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1.01.07	2021.03.08	2021.05.07	2021.07.07	2021.09.07	2021.11.08	
59A	2	2층	1	442,221,199	220,778,801	663,000,000	132,6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132,600,000
		4층	1	442,221,199	240,778,801	683,000,000	136,6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136,600,000
59B	11	2층	2	441,689,043	195,310,957	637,000,000	127,4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127,400,000
		3층	1	441,689,043	200,310,957	642,000,000	128,4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128,400,000
		4~5층	2	441,689,043	215,310,957	657,000,000	131,4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31,400,000
		6층이상	6	441,689,043	230,310,957	672,000,000	134,4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134,400,000
84	24	2층	6	615,065,297	215,934,703	831,000,000	166,2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166,200,000
		3층	3	615,065,297	220,934,703	836,000,000	167,2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167,200,000
		4~5층	2	615,065,297	235,934,703	851,000,000	170,2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170,200,000
		6층이상	13	615,065,297	250,934,703	866,000,000	173,2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173,2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본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금번 모집공고를 통한 분양시 조합원 및 보류지 세대를 제외한 세대를 일반분양하며, 해당 일반분양분에 대한 타입별 동, 라인, 호수, 층 등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강동구청 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유상옵션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 대지권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이 기타공용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공원, 도로 등 각종 기부채납시설면적은 계약면적에 미포함 됨.)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용도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고, 세대별 대지지분은 용도별로 산출된 면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주택형별 분양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으로 구분하여 공급되며, 조합원무상제공품목,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8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복무군인		-	**1**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	2	3	5
		일반공급(25%)	-	-	1	1
		계	**-**	**2**	**4**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기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50%)	-	1	1	2
		서울시 2년 미만, 경기, 인천(50%)	-	-	1	1
		계	**-**	**1**	**2**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1**	**1**
합 계			**-**	**4**	**7**	**1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서울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 일부개정안(2018.02.26.)으로 지역우선공급(서울시 2년 이상 거주) 50%,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시 2년 미만 거주, 인천광역시, 경기도)에게 공급할 수 있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변경되었음.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 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table>
<tr><td></td><td>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서울특별시</th><th>인천광역시</th><th>경기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r><td>재당첨제한</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table>
<tr><th colspan="2">당첨된 주택의 구분</th><th colspan="2">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th></tr>
<tr><td colspan="2">-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td><td colspan="2">10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tr>
<tr><td colspan="2">-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td><td colspan="2">7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tr>
<tr><td colspan="2">- 토지 임대주택(제1항 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 2항 7호 가목)</td><td colspan="2">5년</td></tr>
<tr><td rowspan="4">-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 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 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 2항 1,2,4,6,8호)</td><td rowspan="2">과밀억제권역</td><td>85이하</td><td>5년</td></tr>
<tr><td>85초과</td><td>3년</td></tr>
<tr><td rowspan="2">그 외</td><td>85이하</td><td>3년</td></tr>
<tr><td>85초과</td><td>1년</td></tr>
</table>
</td></tr>
<tr><td>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 입주자 선정</td><td>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td></tr>
</table>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7호(군인복지기본법)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제외 - 추천기관 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공급 세대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호 및 제47조의2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 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수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자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공급 세대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7조의2에 의거 전체/분양가격 9억 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야여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급 세대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47조의2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 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20% 범위 내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② 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항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입주자 선정 순서(소득→순위→거주지역→미성년자녀수), 2순위 경쟁시 동일방법으로 선정 ▷우선공급 75%→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

		▷일반공급 25%→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산정) ① 소득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⑴ 우선공급 75% : 소득 100% 이하(부부합산 120%이하) ⑵ 일반공급 25% : 소득 120% 이하(부부합산 130%이하) ② 순위 - 같은 소득기준 및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⑴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자 ⑵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⑶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1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3% 범위 내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함.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②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발표하며(www.applyhome.co.kr),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6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120%초과~130%이	6,665,981원	7,471,611원	8,326,026원	9,112,901원	9,899,775원	10,686,650원

	경우	하	~ 7,221,478원	~ 8,094,245원	~ 9,019,860원	~ 9,872,308원	~ 10,724,756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 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 동·호수 결정	•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 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함.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 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시 2순위 해당)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 한 경우만 방문접수(홍보관) 가능함. •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홍보관)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자격 증빙서류 대조,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음. • 현장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부적격 당첨, 당첨 취소)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동일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개3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도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부적격 처리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기재한 사항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주택의 해당순위 (1순위 24개월)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2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당해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유의사항,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 됨.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2순위로만 청약 가능)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 됨.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포함)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⑵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 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함) ⑶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에 해당하며 기타로 청약하여야 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100% 가점제) ⑴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⑵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가족 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⑴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⑵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⑶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⑷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수도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가능) ⑴ 세대주가 아닌 자 ⑵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⑶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d rowspan="9">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5">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5">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d rowspan="5">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able>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 층, 동, 호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 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수도권(경기/인천)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수도권(경기/인천)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⑴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의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 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공개함.

IV.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2020.10.20.(화요일) (인터넷청약 : 08:00~17:30) (방문접수 : 10:00~14:0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홍보관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인터넷 접수 시 해당 없음)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접수 장소에 비치(본인 및 세대원 전원제출)
	○		주민등록등본	본인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 및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전체포함)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인감도장' 제출 생략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전체포함)로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발생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전체포함)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포함하여 "상세"(전체포함)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해당 당첨자만 해당)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함.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 당사 홍보관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전체포함)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관련 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홍보관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홍보관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	• 비사업자의 경우(당사 홍보관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홍보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해당자 모두)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피부양자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결혼 • 만 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반드시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②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과일 기준 가장 최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①번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홍보관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접수장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예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 전 반드시 서울특별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당해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미만 거주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접수일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2020년 10월 21일(수요일) 08:00~17:3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20년 10월 22일(목요일) 08:00~17:30		
	2순위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20년 10월 23일(금요일) 08:00~17:30		

※ 홍보관 내에서는 청약접수가 불가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안내,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⑴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모집공고일 기준)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⑵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모집공고일 기준)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1순위 “해당지역” 청약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⑶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서 효력이 상실되어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우선공급(*)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서울시 2년 미만, 경기·인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홍보관)가 가능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홍보관)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

	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V.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 일시 : 2020.10.29.(목요일)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11.10.(화)~ 2020.11.12.(목) (10:00~16:00) • 장소 -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홍보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8-14)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 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여할 수 없음. 단,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은 무효처리 됨. 또한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10.29 (목) ~ 2020.11.07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0.29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으로, 고지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함.)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홍보관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특별공급/일반공급)	2020.11.02.(월) ~ 2020.11.07.(토) 6일간, 10:00~16:00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홍보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8-14)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특별공급/일반공급)	추후 별도 통지	

■ 당첨자(예비당첨자)제출 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에 홍보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무주택 서약서	-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당사 홍보관에 비치(세대원 전원)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전체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전체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 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당사 홍보관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당사 홍보관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2018.01.01.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요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당사 홍보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만30세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자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 · 비속	•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1순위 해당지역 당첨자의 경우
부적격 당첨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Ⅶ.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안내	2020.11.10.(화) ~ 2020.11.12.(목) 3일간, 10:00~16:00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홍보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8-14)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관리계좌	우리은행	1005-503-785091	벽산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스지신성건설(주),주택도시보증공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금은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분양계약 체결 시 입금증을 지참하여 홍보관에 제출하여야 함(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고,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라며, 홍보관에서 분양대금 직접 수납은 불가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별도의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

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 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고,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⑴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⑵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⑶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⑷ 부적격자 중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임을 증명하는 경우 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홍보관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①수도권은 1년, ②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①,②의 지역 중 위축지역은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서울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후 분양대금연체, 계약부정행위 등에 따라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구비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

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형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2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2018.09.13.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 포함)	○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 서류		○	상기 서류 외 계약자인감증명서(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도장	계약자 본인발급	본인 외 모두(배우자 포함) 제3자로 간주 / 대리인계약은 가족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건물등기부 등본	해당 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한국감정원 발급)
비고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거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유상)

①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원, VAT포함>

구 분	59A	59B	84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4,900,000	4,060,000	4,090,000

②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홍보관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시 시공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추가설치품목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의 품절, 품귀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으로 추가설치품목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타사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해 하자 처리 요청을 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의무는 계약자(입주자 및 승계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의 추가 설치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형태, 세대간 마감 및 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세대모형 전시 하였으나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선반의 설치유무, 수량, 크기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량에 따라 확장금액에 반영됨.
- 발코니 확장은 제시된 선택형 외에 개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전면의 발코니 부분에 규격에 적합한 국기꽂이를 설치하여야 함.
- 공급시기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 계약

① 시스템 에어컨 설치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 위치	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59A	선택1	거실 + 침실1	3,630,000	726,000	726,000	2,178,000	택1	모델명 : 삼성 AJ052MB1DBC1 / 침실1(안방)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490,000	1,298,000	1,298,000	3,894,000		
59B	선택1	거실 + 침실1	3,630,000	726,000	726,000	2,178,000	택1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490,000	1,298,000	1,298,000	3,894,000		
84	선택1	거실 + 침실1	4,070,000	814,000	814,000	2,442,000	택1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7,150,000	1,430,000	1,430,000	4,290,000		

② 에어컨 냉매배관 추가설치(시스템에어컨 미신청 세대)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설 치 위 치	가격	계약금(20%)	중도금(20%)	잔금(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전주택형	침실2,침실3 추가설치	935,000	187,000	187,000	561,000	시스템에어컨 미신청 세대에 한함

③ 현관중문 설치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가격	계약금(20%)	중도금(20%)	잔금(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전주택형	1도어 슬라이딩도어	990,000	198,000	198,000	594,000	

④ 바닥타일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가격	계약금(20%)	중도금(20%)	잔금(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59A	폴리싱 바닥타일 (거실 / 주방)	1,980,000	396,000	396,000	1,188,000	
59B	폴리싱바닥타일 (거실 / 주방)	1,760,000	352,000	352,000	1,056,000	
84	폴리싱 바닥타일 (거실 / 주방)	2,530,000	506,000	506,000	1,518,000	

⑤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설치 위치	가격	계약금(20%)	중도금(20%)	잔금(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59A	메인상판+아일랜드상판벽면+주방일부벽면	1,980,000	396,000	396,000	1,188,000	
59B	메인상판+아일랜드상판벽면+주방일부벽면	2,310,000	462,000	462,000	1,386,000	
84	메인상판+아일랜드상판벽면+주방일부벽면	2,530,000	506,000	506,000	1,518,000	

⑥ 슬라이딩 붙박이장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규 격	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59A	L3000*D600*H2340	2,860,000	572,000	572,000	1,716,000	
59B	L3450*D600*H2340	3,190,000	638,000	638,000	1,914,000	
84	L3000*D600*H2340	2,970,000	594,000	594,000	1,782,000	

⑦ 붙박이장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규 격	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59A	L1450*D600*H2340	1,210,000	242,000	242,000	726,000	
59B	L1250*D600*H2340	1,100,000	220,000	220,000	660,000	
84	L1750*D600*H2340	1,430,000	286,000	286,000	858,000	

⑧ 가스하이브리드 쿡탑(3구)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전주택형	SK매직 가스하이브리드 3구 쿡탑	935,000	187,000	187,000	561,000	

⑨ 빌트인 식기세척기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84	SK매직(DWA-80V5B)	1,210,000	242,000	242,000	726,000	59A, 59B 없음

⑩ 비데(양변기)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전주택형	대림통상(비데 일체형)	550,000	110,000	110,000	330,000	

⑪ 비데(일반형)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전주택형	대림통상(비데 일반형)	220,000	44,000	44,000	132,000	

⑫ 전동 빨래건조대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전주택형	안방 전동 빨래건조대 (KHAD-AL90)	220,000	44,000	44,000	132,000	

⑬ 드레스룸 가구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59A	드레스룸 가구(확장형)	385,000	77,000	77,000	231,000	
84	드레스룸 가구(확장형)	440,000	88,000	88,000	264,000	

⑭ 유의사항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이하 유상 옵션)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유상 옵션 설치 공사는 해당 유상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가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고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동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유상 옵션은 유상 옵션 계약 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은 불가함.
-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음.
- 상기 유상 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기 바람.
- 상기 유상옵션 품목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유상옵션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옵션 외 입주자가 에어컨 별도 설치 시 누수, 천장손상 등에 대한 하자는 당사의 책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바닥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 공사 시 홍복관과 타일 패턴이 다를 수 있음
- 바닥 마감(거실 및 주방 바닥 타일) 선택 시 마루, 현관디딤판 등 바닥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됨.
- 현관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옵션 미선택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고 도배 마감됨.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주택형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타입의 디자인 외에는 적용이 불가함.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에 따라 현관 디딤석의 위치는 다를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

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및 시행 지침에 따름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①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2-10-028431	에스지신성건설주식회사

②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공사비는 계약금(20%), 중도금(20%) 잔금(6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입금증, 이체확인서 등)을 홍보관에 제출(홍보관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함)
•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 '1030702홍길동']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완료 시 고지 된 것으로 하고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착오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금액

①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도어록	발코니내부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쉬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벽체도장),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반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등), 샤워부스, 욕실 악세서리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폰(부부욕실만 적용)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주방TV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 선택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②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원, VAT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59A	59B	84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157,210,715	157,070,210	217,029,206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③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 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 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에는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되며,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수량/사양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안,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만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 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설정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 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IX.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 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예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 방문을 실시 할 예정임.
- 사전 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방문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안내 ⇒ ④ 입주자 방문 및 확인사항 작성 ⇒ ⑤ 방문표 제출 ⇒ ⑥ 보수 완료 ⇒ ⑦ 보수 완료 여부 확인
- 사전 방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 입주예정일 : 2022년 0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계 법령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시행으로 일일 공사기간 단축 시 단축기간 만큼 공기연장이 될 수 있고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실/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용 됨.

■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VAT포함>

구분	건축/토목/기계	전기/소방/정보통신	비고
회사명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에스비이엔씨	
감리금액	557,103,800	115,5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음.

■ 공공택지 외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항 목	공 시 내 용	비 고
1. 택지비	16,770,704,000원	
2. 직접공사비	5,493,613,560원	
3. 간접공사비	2,133,925,670원	
4. 설계비	215,676,360원	
5. 감리비	83,874,140원	
6. 부대비	623,065,040원	
7. 그 밖의 비용	701,600,230원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및 감정기관

<단위:원, VAT포함>

구분	금액	감정기관	비고
택지비	46,128,803,000	하나감정원	
	44,822,778,000	대일감정원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 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3항1호)	단열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벵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3항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9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전동기(단, 0.7kW이하 전동기ㅡ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3,249,600,000	01222020-101-0003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

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X.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도로, 철길,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 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홍보관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등 주변시설현황,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2째 자리로 면적이 표기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홍보관 및 사업시행인가 승인도서(변경승인 포함)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함
• 소유권 이전 등기시 기 계약자의 실거래필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사오니, 분양권 전매시 관련서류를 반드시 보관 하여주시기 바라며, 전매 확인용 제출서류에 대해 복사/재발행은 불가함.
•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비치하여 분양계약을 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인가 후에도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입주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마감재

o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홍보관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홍보관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도면으로 우선함)
o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o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o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음
o 거실 아트월, 현관 바닥, 거실 및 주방 바닥(유상옵션)의 타일은 패턴이 일정하지 않음
o 공용욕실에 설치되는 인조강화대리석 젠다이의 중간에 연결조인트가 생길 수 있음
o 주방 상판 (기본) 및 상판,벽체(유상옵션) 엔지니어드스톤은 자재 특성상 시공 조인트가 발생하며, 시공조인트 발생으로 인해 미관상 하자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홍보물

o 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일정기간 보관할 예정임
o 홍보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o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건축허가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o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공급간지, 리플렛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있음
o 홍보관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o 입주자 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o 홍보관 내 건립세대 모형,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o 홍보관 내 건립세대 모형 및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모형으로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일부 평면 및 외관(색채, 디자인)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남쪽 방향이 매봉산에 인접하여 저층부 일조/채광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시행자, 시공사,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 단지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에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로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단지 내 보도와 포장을(색상 또는 재질) 달리하여 공공보행통로임을 인식 할 수 있게 계획됨.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사업시행(변경)인가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음.

-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이용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함.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동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등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전기실 인접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외벽 석재마감은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설계도면대로(저층 1개층 필로티 부분을 지정석재 또는 석재뿜칠 혼합) 시공되고 2층에서 12층은 일부 석재뿜칠을 포함한 페인트 마감으로 시공되며 석재와 페이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간판(회사 로고), 및 홈네트워킹 설비, 승강기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수신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 이용을 위해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휴게소, 부대복리시설, 대지내 공지, 소방도로, 재활용(쓰레기)보관소,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입주시단지내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됨.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문주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문주는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에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단지 상황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 특성상 또는 민원을 고려하여 문주 설치가 불가할수도 있음.
- 경비실은 총1개소 설치 예정이며, 실시공시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 추가
설치(이동식 또는 고정식)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휀룸,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함.
- 단지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보관소가 3개소 설치될 예정(개소,위치 및 규격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일부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함.
- 각 동 지하1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 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당 단지에는 총 1개소의 주차장 차량 출입구가 있으며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경우 일부 저층세대는 입출차 주의 경보음,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시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차장 차로 6M이며, 주차장 출입구 높이 통행로 2.3M, 주차구역 2.1M 임.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101동 및 102동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103동은 지하1층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음. 103동 지하2층에서 지하1층은 연결계단 이용 가능.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동과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훤)가 노출될 수 있음.
- 101동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 및 주민자치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102동 지하1층에 어린이도서관, 주민회의실,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각 동별 이용성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관청의 설계변경등으로 일부시설은 미설치되거나 미건립 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된 동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쉼터, 광장, 부대복리시설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단지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
- 103동 인근에 도시가스 인입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설치 될 예정이며, 위치와 크기, 형태는 관할 도시가스 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됨.
- 101동, 103동 하부 지하1층에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외부새시가 설치되지 않음.(외부샤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35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철재방화문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주 후에도 개별적으로 이를 제거 또는 임의 변경 할 수 없음.
- 세대 내부가구(복도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수납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 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59A타입의 에어컨실외기는 침실1 후면 발코니 내에 설치되고, 59B, 84타입의 에어컨실외기는 주방 발코니 내에 설치되어,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에 가스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안방발코니, 대피공간 및 주방발코니, 욕실의 경우 비난방공간 임.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1~3층) 세탁실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됨.(저층배관 통기)
- 세대내 실내환기는 자연환기시스템을 적용함.
- 일반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은 관련법 개정에 의해 세대 내부(거실)에 노출 시공되며, 이에 따라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대피소 내부에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에어컨이 설치되는 안방(침실1), 거실은 에어컨냉매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되지 아니함.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에는 별도의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내 자연환기시스템의 설치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에어컨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되며 확장여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시공되는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미사용시 해당 없음).
• 인조강화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은 홍보관 모형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비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세대와 비확장 세대가 좌·우·상·하에 인접한는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발코니 면적의 감소 및 일부벽체가 돌출될 수 있음.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됨.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홍보관모형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 모형은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임.
• 홍보관 모형에 표시된 온도 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 모형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실외소음도”라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고 준공인가신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함.
•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홍보관의 현관프레임을 경계로 세대내부에 한함.
•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등은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함
• 홍보관 모형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홍보모형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홀, 승강기 의장 및 용량, 탑승위치)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건축물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국토교통부 고시 2018-145)을 준수함.
• SG신성건설(정비사업조합)과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기기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 단, AI스피커 제공시 무상보증기간은 제조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함.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JU+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AP)를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샐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규칙 제20조의2에 단지내에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의 특고압 전력공급을 위한 개폐장치가 설치 될 수 있음.

■ 기타
• 본 아파트는 투기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이후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함. (추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020년 3월 24일부터 체결하는 최초 계약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토지법」 제9조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벽산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에스지신성건설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75길 19, 603호(명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35,3층(가산동)
법인등록번호	244171-0012886	110111-0030463

• 홈페이지 :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com
• 홍보관 위치 및 분양안내 :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홍보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8-14)
• 문의전화 : 02) 426-0889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